

#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 번호	479
----------	-----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출자 : 서초구청장

## 1. 제안이유

- ‘서초구가족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5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 현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재위탁 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향후에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이며, 이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문화 증진 등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가족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필요성
  -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가족지원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의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함.

#### 다. 위탁사무 내용

-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통합사업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자녀성장·관계향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 서초엄마힐링센터 및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주소	층수	면적	이용대상	위탁기간	위탁체
서초구가족센터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동)	지상4~5층	379㎡	서초구민 등	2021. 8. 1.~ 2026. 7. 31.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5년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10,722,658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산출근거
  - 사업비 : 8,419,559천원 / 인건비 : 2,037,824천원 / 운영비 : 265,275천원
  - ※ 3개년도(2024년~2026년) 민간위탁금 평균으로 추계

#### 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가족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나.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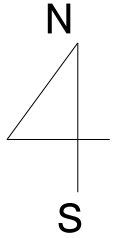
- 2016. 3. 8. : 제260회 서초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6. 7. 1. ~ 2017. 6. 30.(1년) : 재계약
- 2017. 7. 1. ~ 2020. 6. 30.(3년) : 재위탁
- 2020. 7. 1. ~ 2025. 6. 30.(5년) : 재계약
- 2021. 4. 8. : 수탁자(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계약해지 의사 표명
- 2021. 6. 16.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공개경쟁)
- 2021. 8. 1. ~ 2026. 7. 31.(5년) : 재위탁
- 2026. 3. :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다. 향후계획

- 2026. 4.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5년),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절차 추진
- 2026. 5. : 위·수탁 협약 체결

# 붙임

# 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초구가족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동)
- 연락처 : 02-576-2852



## 지역여건

- 방배역(2호선) 및 내방역(7호선) 역세권 입지
- 남부순환로, 효령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
- 각종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주거 중심지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초·방배유스센터 등 유관기관 인근

**붙임**

**현장사진**



사진설명

서초구가족센터 외·내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같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참고 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 6명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 □ 심의결과 통보서(기획예산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건명	서초구가족센터 위탁관리 운영(계계약)	
부서명 (주관부서)	여성보육과	부서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6697)
		팀장 출산장려팀장 박진영 (6714)
		담당자 출산장려팀 진은재 (6717)
시설개요	소재지	(본부)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5층
	시설규모	379㎡ (115평) *본부 기준
	시설용도	서초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6. 8. 1. ~ 2031. 7. 31.(5년)	
사업목적 및 위탁 내용	<b>○ 사업목적</b> - 서초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으로 서초구민의 가족관계·가족문화·가족구성원 복지 증진에 기여  <b>○ 위탁사무 내용</b> -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통합사업 - 서초엄마힐링센터 및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자녀성장·관계향상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등	
	<b>■ 적정</b>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26. 3. 4.(수)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6명 출석 - <b>적정 의결</b>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여성보육과장 귀하		